목록

재경관리사 원가관리회계 요약정리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요약정리	1	
재경관리사 재무회계 요약정리	2	8

[원가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 기초 01. 원가의 구성

구분	구성	개념
직접원가(기본원가)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제품별 원가추적 가능
가공원가(전환원가)	제조간접비 + 직접노무비	직접재료비를 제외한 원가
제조간접비	간접재료비 + 간접노무비 + 간접경비	직접원가를 제외한 원가
총제조원가	직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 제조간접비	원가의 합계
판매원가	제조원가 + 판매비와관리비	판매관리비가 포함됨
판매가격	판매원가 + 이익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

02. 원가의 분류

분류기준	구분	내 용
이가채디	변동원가	조업도가 변동하면 총원가가 비례적으로 변동
원가행태	고정원가	조업도의 변동과 무관하게 총원가가 일정
호점기노사	직접원가	특정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 ex) 직접재료, 직접노무
추적가능성	간접원가	특정 원가대상에 직접 추적 불가 ex) 제조간접

제조활동	제조원가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 ex) 직접재료, 직접노무			
연관성	비제조원가	제품 제조 이외 과정에서 발생 ex) 판관비			
수익과의 대응관계(방법)	제품원가		제조원가 중 자산화하여 판매시점까지 비용발생을 이연시킴		
10 2 10 17	기간원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의사결정에 영향	관련원가	의사결정 대안 간 차이 (영향 O)		
		매몰원가	과거의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 (영향 X)		
의사결정과의 관련성	회피가능성 회피가능성 실제 현금지출여부	회피가능원가	특정대안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원가 (의사결정에 따라 변동)		
		회피불능원가	특정대안을 선택하지 않아도 계속 발생하는 원가		
		기회원가	포기한 대안 중 최선의 대안으로부터 달성가능했던 최대이익(또는 최소비용) - 장부상 계상 X		
		현금지출원가	실제 현금지출을 수반		
자산과의 관련성	미소멸원가	제조원가 중 자산화하여 판매시점에 비용으로 인식 (미래 경제적 효익 제공)			

_		
	소멸원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 (미래 경제적 효익 X)
토 케 키 노 서	통제가능원가	경영자가 발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가
통제가능성	통제불능원가	경영자가 발생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원가
시점 별	역사적 원가	의사결정 이전 시점에 이미 발생한 원가
ा च च	예정(미래)원가	의사결정 이후 시점에 발생할 원가

※의사결정 시 고려여부

매몰원가	관련원가	기회원가	회피가능원가
X	0	0	0

03. 제조원가의 흐름

	직접재	료원가	재공	품	제	품
	기초재고	당기사용	기초재공 품	당기제품	기초제	매출원
매입 >	기소재고	분	직접재료 원가	제조원가	뚬	가
	당기매입	기말재고	직접노무 원가	기말재공	당기제 품	기말제
	坦	기뉟새끄	제조간접 원가	<u> </u>	제조원 가	<u>포</u>

04. 원가의 계산

구분	계산
재료원가	기초재료재고액 + 당기재료매입액 - 기말재료재고액
당기총제조원가	직접재료원가 + 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 재료원가 + 노무원가 + 기타제조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기초재공품재고액 + 당기총제조원가 - 기말재공품재고액
매출원가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05. 합리적 원가배분기준

배분기준	내 용
인과관계	 원가배분대상에 제공된 서비스나 활동량에 비례하여 공통원가를 배분 가장 이상적인 배분기준 ex) 작업준비원가의 작업준비횟수 비례배분
수혜	- 원가대상이 공통원가로부터 제공받은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따라 배분 - 수익자부담원칙에 충실한 배분기준 - 물량기준법에 의한 결합원가의 배분
부담능력	원가대상의 원가부담능력에 비례하여 공통원가를 배분상대적 판매가치법에 의한 결합원가의 배분
공정성과 공평성	- 공정성과 공평성에 의해 공통원가를 원가대상에 배분- 정부와의 계약에서 주로 사용

06. 보조부문의 원가배분

구분	배분법	정의
	직접배분법	- 보조부문상호 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방법 - 보조부문은 제조부문만을 위해 용역을 제공함을 가정
용역수수에 의한 배분	단계배분법	정해진 배분순서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후순위의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
	상호배분법	- 보조부문상호 간의 관련성을 모두 고려해서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 배분 할 총원가 = 자기부문의 발생원가 + 다른 부문으로부터 배분된 원가
원가행태에 의하 배부	단일배분율법	- 보조부문원가를 하나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 - 원가의 행태를 고려하지 않음 - 원가배분의 합리성이 떨어짐 - 모든 원가를 실제(예정) 용역사용량을 기준으로 배분
	이중배분율법	- 보조부문원가를 고정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하여 별도기준에 의해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 고정원가:최대용역사용가능량 기준 - 변동원가:실제(예정)용역사용량 기준

생산형태에 따른 원가계산 01. 개별원가계산 vs 종합원가계산

구분	개별원가계산	종합원가계산
생산형태	주문생산(다품종 소량생산)	공정별 생산(소품종 대량생산)
업종	조선, 건설업 등	식품, 제분, 정유업 등
원가집계	제품별 제조지시서	기간단위 생산량
원가구분	직접비와 간접비	재료비와 가공비
배부방식	제조간접비 배부 원가계산표 작성	완성품환산량 단위원가에 의해 배부
장점	정확한 원가계산 효율적인 통제	단순함 공정별 책임중심점 명확
단점	복잡, 고비용	개별제품의 원가집계 어려움

02. 개별원가계산의 과정

1 단계. 원가대상이 되는 개별 작업파악
2 단계. 직접원가를 파악하여 작업별 추적
3 단계. 제조간접원가 파악
4 단계.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 설정
5 단계. 간접원가 배부율 계산 및 작업별 배부

03. 종합원가계산의 절차

단계	내용
1 단계. 물량흐름의 파악	- 물량: 최종산출물 기준의 수량 - 공정의 완성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음 - 물량 파악 방법: 기초재공품수량 + 당기투입량 = 당기완성품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2 단계. 완성품환산량의 계산	 완성품환산량: 일정기간 동안 투입된 재료와 가공의 노력을 제품생산에 투입했더라면 생산가능했던 수량 완성품환산량의 계산: 물량 * 완성도
3 단계. 배분대상원가 요약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배분대상원가를 요약
4 단계. 단가의 계산	완성품환산량단위당원가 = 요약된 배분대상원가 / 완성품환산량
5 단계. 원가의 계산	원가흐름의 가정에 따라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를 계산

04. 평균법과 선입선출법의 비교

구분	평균법	선입선출법
1 단계	완성품물량을 구분하지 않음	완성품물량을 구분
2 단계	전기부터의 총작업량 반영	당기 중의 작업량만 반영
3 단계	기초재공품원가와 당기투입원가가 원가의 배분 대상	당기투입원가만 원가의 배분대상
4 단계	전기단가와 당기투입원가를 가중평균	당기투입원가 만으로 단가산정
5 단계	기초재공품원가는 완성품원가와 기말재공품원가에 배분	기초재공품원가는 완성품에만 가산

표준원가

01. 실제원가계산 vs 표준원가계산

구분	실제원가계산	표준원가계산
목적	결산 및 재고평가	관리적 목적
원가생성시점	실적 발생 후 (사후원가계산)	실적 발생 전 (사전원가계산)
금액평가시점	실제원가 마감 시 가능	실시간 평가가능
관리노력	적음	많음

02. 표준원가계산의 목적(장점)

구분	내 용
원가관리와 통제	- 표준원가와 실제원가 간의 차이분석을 통해 원가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예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 *예외에 의한 관리 : 용인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를 설정한 후 범위를 넘어서는 중요한 차이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법
예산편성	사전에 설정한 표준원가가 예산 설정에 이용
재무제표 작성	재무제표상의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원가정보로 이용
원가보고의 신속성	- 적시성 있는 원가정보가 제공 - 원가흐름의 가정이 불필요
제품단위당 원가의 일정함	기준조업도에 의해 제품단위당 고정제조간접원가가 산정되므로 생산량에 따라 제품단위당 원가가 변동하지 않아 분석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음

03. 원가요소별 차이분석 (왼쪽이 크면 불리, 오른쪽이 크면 유리)

원가요	차이분석				
소	[AQ * AP]		[AQ * SP]		[SQ * SP]
직접재 료 원가	실제구입 원가	가격차 이	<u>실제투입량</u> * 표준가격	능률차 이	표준투입량 * 표준가격
직접노 무 원가	실제발생 액	가격 차이	<u>실제시간</u> * 표준임률	능률차 이	표준시간 * 표준임률
변동제 조 간접원 가	실제발생 액	소비 차이	실제조업도 * 표준배부율	능률차 이	표준조업도 * 표준배부율
고정제 조 간접원 가	실제발생 액	예산 차이	고정제조간접원 가예산	조업도 차이	고정제조간접 원가 배부액

04. 원가차이배분방법

비배분법	매출원가조정법	- 모든 원가차이를 매출원가에서 조정 - 매출원가의 비중이 기말재고자산의 비중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 사용
	영업외손익법	모든 원가차이를 영업외손익에서 조정하는 방법
	*************************************	매출원가와 기말재공품, 기말제품의 총원가 비율대로 원가차이를 배분
비례배분법	원가요소별비례배분법	- 요소별 원가차이를 매출원가, 기말제품, 기말재공품 금액 중 해당 원가요소의 금액 비율대로 배분 - 가장 실제원가계산의 근사치로 조정

원가계산의 범위

01. 전부원가계산 vs 변동원가계산 vs 초변동원가계산

구분	전부원가계산		원가계산 원가계산)	Ž	본변동원가계산(재료처리량원가계산)
특징	- 모든 제조원가를 제품원가로 보는 원가계산방법 (고정제조간접원가도 포함) - 원가부착개념 근거 - 전통적 손익계산서 방식	제품 포함 고정 기간원 ² 처 ² 원가 ⁷ - 원가 - 공	세조원가만 원가에 시키고 원가는 가(비용)로 기하는 세산방법 희퍼개념 근거 헌이익, 실가 계산		직접재료원가 등 제품단위수준 변동원가만 제품원가에 포함시키는 원가계산 - 가공원가는 기간비용(원가) 처리
손익 계산서	매출액 (-) 매출원가 	(-) 매를 제조 (-) 변동 공학 (-) 5	출액 (변동) 출원가 		매출액) (제품단위수준) 변동원가 금창출공헌이익 (-) 운영비용 영업이익
	직접재료원가				제품원가
원가	직접노무원가	제품원가	제품원기	ŀ	
시스템	변동제조간접원가	시마			기간원가
	고정제조간접원가		기간원기	}	

02. 각 원가계산 별 재고자산의 변화에 따른 영업이익

재고자산의 변화	영업이익 크기의 비교
기초재고량 = 기말재고량 (생산량 =	전부원가계산 = 변동원가계산 =
판매량)	초변동원가계산
기초재고량 < 기말재고량 (생산량 >	전부원가계산 > 변동원가계산 >
판매량)	초변동원가계산
기초재고량 > 기말재고량 (생산량 <	전부원가계산 < 변동원가계산 <
판매량)	초변동원가계산

03. 원가계산방법 간 영업이익의 전환

	<차이 원인: 고정제조간접원가>
변동원가계산> 전부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이익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u>고정제조간접원가</u> (-)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u>고정제조간접원가</u>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
	<차이 원인 : 변동가공원가>
초변동원가계산> 변동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이익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u>변동가공원가</u> (-)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u>변동가공원가</u>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이익
	<차이 원인 : 가공원가>
초변동원가계산> 전부원가계산	초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이익 (+)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u>가공원가</u> (-)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u>가공원가</u>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이익

계획과 통제

01. 원가 조업도 이익분석

구분	내용
공헌이익	공헌이익 = <u>매출액 - 총변동원가</u> = <u>단위당 공헌이익 * 수량</u>
0 11 7	*단위당 공헌이익 = 단위당 판매가격 - 단위당 변동원가
공헌이익률	공헌이익률 = 공헌이익 / 매출액 = <u>단위당 공헌이익 /</u> <u>단위당 판매가격</u>
손익분기점 분석	 이익을 () 으로 만드는 매출액 손익분기점 < 수익: 이익 손익분기점 > 수익: 손실 손익분기점 판매량 = 고정원가 / 단위당 공헌이익 손익분기점 매출액 = 고정원가 / 공헌이익률
목표이익	- 특정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매출액 계산 - 목표 판매량 = (고정원가 + 목표이익) / 단위당 공헌이익 - 목표 매출액 = (고정원가 + 목표이익) / 공헌이익률
안전한계	 -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포기할 수 있는 최대 매출액 - 안전한계 = 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안전한계율 = (매출액 - 손익분기점 매출액) / 매출액
영업레버리지	- 기업의 영업비 중 고정비가 차지하는 정도 - 영업레버리지가 클수록 매출액의 변화에 따라 이익의 변화가 커짐 - 영업레버리지도 = <u>영업이익변화율 /</u> 매출액변화율 = <u>공헌이익 / 영업이익</u>

02. 활동기준원가계산방법

1 단계 : 활동분석	- 기업의 기능을 활동별로 분석 - 기업의 기능 : 단위수준, 배치수준, 제품수준, 설비수준으로 구분 가능
2 단계 : 원가의 집계	각 활동별로 소비되는 원가를 집계
3 단계 : 활동별 원가동인의 결정	활동별 배부기준 결정

4 단계 :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집계한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 활동별
배부율 결정	배부기준
5 단계 : 활동별 제조간접원가 계산	소비된 활동 수 * 활동별 배부율

03. 활동기준경영관리의 실행

- 전략분석 : 수익성 높은 활동을 분석

- 가치분석 : 공정개선과 원가절감을 통해 비부가가치활동을 제거

- 원가분석 : 원가절감기회 식별 및 성과개선을 위한 노력

- 활동기준예산 : 활동기준으로 예산수립절차를 수행

04. 수명주기원가계산의 유용성

- 수명주기의 단계별로 수익성에 대한 집계가 가능하여 프로젝트 전체의 이해 향상

- 제조 이전단계에서 대부분의 제품원가가 결정되는데 설계단계에서 원가절감이 가능
- 원가발생의 상호관계 파악 가능
- 단계별로 원가의 발생 정도를 파악 가능

05. 품질원가의 종류

	예방원가	불량품 생산 예방 목적	
통제원가		ex) 품질교육, 공정엔지니어링, 공급업체 평가 등	
	평가원가	불량품 적발 목적	
		ex) 원재료나 제품의 검사, 검사설비 유지, 현장 및 라인 검사 등	
실패원가	내부실패원가	불량품이 고객에게 인도되기 전에 발견되면서 발생하는 원가	
		ex) 공손품, 작업폐물, 재작업, 재검사, 작업중단 등	
	외부실패원가	불량품이 고객에게 인도된 후 발견되면서 발생하는 원가	
		ex) 고객지원, 보증수리, 교환, 반품, 판매기회 상실 등	

의사결정을 위한 원가정보의 활용

01. 단기의사결정의 유형

구분	경우
특별주문의 수락 또는 거부	특별주문을 수락하는 경우 - 유휴설비 보유: 특별주문가 > 증분수익 - 증분원가 - 유휴설비 없음: 특별주문가 > 증분원가 + 추가설비원가 + 기존판매 감소 공헌이익
제품라인의 유지 또는 폐지	제품라인을 유지하는 경우 - <u>증분 공헌이익 - 회피가능고정원가 + 기회원가 > 0</u>
부품의 자가제조 또는 외부구입	외부구입하는 경우 - 기존설비대체가능 : 외부구입원가 < 변동원가 + 회피가능고정원가 + 기회원가 - 기존설비대체불가능 : 외부구입원가 < 변동원가 + 회피가능고정원가
결함제품의 즉시판매 또는 추가제공	1) 즉시판매하는 경우 - (추가가공 후 판매가격 - 추가가공원가) < 분리점에서의 판매가격 2) 추가가공하는 경우 - (추가가공 후 판매가격 - 추가가공원가) > 분리점에서의 판매가격

02. 대체가격의 의미와 사업부의 입장

- 대체가격 : 사업부나 기업 내부에서 서로 주고받는 재화나 용역의 이전거래에서 재화나 용역에 부여되는 가격

공급사업부	구매사업부
- 대체가격을 최소한 관련 원가 이상 인식해야 함 - 최소대체가격 = 단위당 증분지출원가 + 단위당 기회원가	- 대체가격이 시장에서 대체할 수 있는 외부구입 원가보다는 작아야 함 - 최대대체가격 = Min(단위당 지출가능원가, 단위당 외부구입원가) *단위당 지출가능원가 = 최종완제품의 판매가격 - 완제품 단위당 추가가공원가

03. 대체가격의 가격결정방법

기준	내용	
시장가격기준	- 재화나 용역의 시장가격을 대체가격으로 결정 - 객관적이므로 공정함	
원가기준	 제품원가를 대체가격으로 결정 이해하기 쉽고 간편 준최적화발생 (사업부와 전체기업 목표의 불일치) 공급사업부의 원가통제에 대한 동기가 없음 원가통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표준원가를 기초로 대체가격을 설정 	
협상가격기준	 공급사업부와 수요사업부가 협의를 통해 결정 최적의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갈등 완화 협상에 많은 시간이 소요 협상결과에 따라 성과가 좌우되어 성과평가가 왜곡될 수 있음 	

04. 대체가격이 기업 전체의 이익에 미치는 효과

구매사업부의 최대대체가격 > 공급사업부의 최소대체가격	구매사업부의 최대대체가격 < 공급사업부의 최소대체가격
- 두 사업부 모두 허용가능한 범위 - 기업 전체 증분이익 = 최대대체가격 - 최소대체가격	- 두 사업부 중 적어도 한쪽은 손실 - 기업 전체 증분손실 = 최소대체가격 - 최대대체가격

05. 현금흐름추정의 기본원칙

- 증분기준 : 관련수익과 관련원가만 고려
-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는 비현금유출이므로 고려하지 않음 (절세효과만 고려)
- 세후기준 : 관련 세금을 차감
- 이자비용 : 자금조달 관련 금융비용의 이자비용은 고려하지 않음
- 인플레이션 : 명목현금흐름(명목할인율로 할인), 실질현금흐름(실질할인율로 할인)

06. 예산자본모형

순현재가치법(NPV)	내부수익률법(IRR)
- 투자안의 순현재가치를 이용하여	-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순현재가치가
투자안의 채택 여부 결정	() 이 되도록하는 수익률)을
- 순현재가치 = (현재가치고려)	요구수익률과 비교
현금유입 - (현재가치고려) 현금유출	- 투자안의 채택
- 투자안의 채택 -> 독립적 투자안 : 순현재가치 > 0 -> 상호 배타적 투자안 : 순현재가치가 가장 큰 투자안 채택	-> 독립적 투자안 : 내부수익률 > 자본비용 -> 상호 배타적 투자안 :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가장 큰 투자안 채택
- 장점 ->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 가치가산의 원칙이 성립 ->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음 -> 기업가치 극대화에 부합	- 장점 -> 화폐의 시간가치 고려 -> 자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음 - 단점 -> 내부수익률의 계산이 복잡
- 단점	-> 특수한 경우 내부수익률이
-> 정확한 투자안의 자본비용	복수로 존재
측정이 어려움	-> 투자규모를 고려하지 않음

성과평가

01. 책임중심점의 종류

종류	내 용	
원가중심점	- 통제가능한 원가에 대해서만 책임 - 주로 제조부문이 대상	
수익중심점	- 매출액에 대해서만 책임 - 주로 영업 및 판매 부문이 대상	
이익중심점	- 원가와 수익 모두에 대해서 책임 - 주로 조직 전체나 각 부서가 그 대상	
투자중심점	- 원가, 수익 및 투자의사결정에 대해서 책임 - 주로 기업의 제품이나 사업부가 그 대상	

02. 책임회계제도의 장점

- 관리자의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응이 가능
- 책임중심점에 권한과 책임이 위임됨에 따라 책임중심점의 동기부여 가능
- 관리기법을 적용하여 성과평가가 가능해짐
- 책임의 소재가 명확해지므로 관리자가 원가와 수익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
- 성과차이분석을 통해 예외에 의한 관리가 가능

03. 투자중심점의 성과평가

구분	투자수익률	잔여이익	균형성과표
계산방 식 (관점)	영업이익 /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 (영업이익/매출액) / (매출액/투자중심점 의 영업자산) = 매출액이익률 * 자산회전율	투자중심점의 영업이의 -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에 대한 부가이자 = 투자중심점의 영업이의 - (투자중심점의 영업자산 * 최저필수수익률)	1) 재무적관점 - 더 높은 이의률을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목표 - 모든 지표들은 궁극적으로 재무성과의 향상과 연계되어야 함 - 주주가치극대화와 직결 - ROA, EPS 등 2) 고객관점 - 기업들은 고객 관점 - 기업들은 고객 관점에서 고객 착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 시장점유율, 고객만족도 시작유지율, 고객만족도 생각 가치를 보려 가지 프로세스의 경쟁우위확보를 위해 노력 - 불량률, 반품률, 납기준수물 등 4) 학습과 성장관점를 내로세스 최적화를

			위한 직원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u>이직률</u> , <u>직원만족도, 인당</u> <u>교육시간 등</u>
장점	- 이익뿐만 아니라 투자액도 고려하여 성과평가 - 동일산업 내 다른 기업과 성과평가 비교 가능	- 기업 전체의 목표와 책임중심점의 목표가 일치 (투자중심점과 회사전체의 잔여이익이 동시에 극대화, 준최적 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음) - 잔여이익 극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강조됨	- 재무적/비재무적 요소를 동시에 성과평가 가능 - 장기/단기적 성과를 동시에 고려 - 기업의 내부와 외부 측정지표간의 균형 가능 - 과거거래에 대한 지표와 미래의 성과동인 간의 균형이 가능
단점	- 준최적화 현상 발생가능 - 회계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므로 회계끼준 적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못함 - 단기적 성과만 강조	투자규모가 다른 사업부의 성과를 서로 비교하면 성과가 왜곡	- 비재무적 측정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움 - 정형화된 측정 수단을 제공하지 못함

04. 경제적부가가치(EVA) 분석

04. 경제석부가가지(EVA) 분석		
의의	- 사업부 수익성과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하여 가치창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종합 지표 - 투하자본에서 부채의 금웅비용뿐만 아니라 자기자본의 자기자본비용을 동시에 고려 - 당기순이익이 아닌 기업 본연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 사용 -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기업 전체의 목표와 일치	
계산	경제적부가가치 = 세후영업이익 - 자본비용 = 세후영업이익 - 투하자본 * 가중평균자본비용	
투하자본의 계산	- 투하자본 = <u>순운전자본 1</u>) + <u>순고정자산 2</u>) 1) <u>순운전자본</u> = 유동자산 - 비영업 관련 유동자산 - 영업 관련 유동부채(단기차입금 등) 2) <u>순고정자산</u> = 영업관련 투자자산 + 영업관련 유형자산 + 영업관련 무형자산	
가중평균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 (타인자본/총자본) + 자기자본비용 * (자기자본/총자본)	

[세무회계]

국세기본법

01. 수정신고/경정청구/기한후신고

구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신고
대상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기한후신고한 자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기한후신고한 자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기한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어 통지되지 전까지 가능	- 일반적: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부터 5 년 이내 - 후발적사유: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 개월 이내	세무서장이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까지
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 개월 이내	신고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사유	- 과세표준과 세액 과소신고 -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이나 환급세액보다 더 많은 경우 -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 등의 사유로 불완전 신고한 경우	이미 신고,결정,경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비해 과대한 경우	
효력(효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 (확정된 세액에 관한	-	가산세 부담 완화

권리,의무관계는 불변)	

02. 납세자권리구제의 종류

구분	명칭	담당기관	기한
납부고지서 전	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 지방국세청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
	이의신청	세무서, 지방국세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
납부고지서	심사청구	국세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	조세심판원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	행정법원	심사청구, 심판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

법인세법

01. 법인세의 계산구조

회계상 당기순이익	(+/-) 세무조정
각 사업연도 소득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 세액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등
차감납부할세액	

0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

구분	결산조정사항	신고조정사항
의의	결산서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결산서 계상 여부에 상관없이 신고서에 계상되어야 하는 항목
대상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으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 항목*	결산조정사항 이외의 모든 항목
세무조정 여부	불가능	가능 (누락된 경우 반드시)
손금귀속시기	결산서에 반영한 연도	법정 귀속시기
손금귀속시기 선택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결산조정사항: 유/무형자산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상 준비금 중 일부 항목, 재고자산/고정자산의 평가차손, 대손금 중 일부

03. 소득처분

구분	세무조정	소득처분 종류		효과
		사외유출	배당	
			상여	소득귀속자에게 과세
(1) 77	(+)조정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기타소득	
(+) 소성			기타사외유출	사후관리 불필요
		유보		세무상 순자산 증가
		기타(잉여금)		사후관리 불필요
(-) 조정		△유보		세무상 순자산 감소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기타(△잉여금)	사후관리 불필요
----------------	----------	----------

04. 소득처분의 종류

1) 사외유출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으로 인한 소득이 법인의 외부로 유출된 경우

종류	귀속자	사후관리	
배당	주주(임원인 주주 제외)	귀속자의 배당소득으로 과세	
상여	임원(주주인 임원 포함) 및 직원	귀속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	
기타사외유출	법인 또는 사업자	없음	
기타소득	위 외의 자	귀속자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2) 유보(△유보) : 세무상 소득이 법인내부에 남아 세무상 순자산을 구성하는 경우

구분	유보	△유보
정의	세무상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소득처분	세무상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소득처분
특성	차기 사업연도 이후 반대의 세무조정인 △유보 (또는 유보)에 의해 상쇄되어 없어짐	
사후관리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표	

05. 익금/익금불산입/손금/손금불산입 항목

구분	내용
익금	1) 사업수익금액 2) 자산의 양도금액 3) 자산의 양도금액 4) 자산수중이익, 채무면제이익 5)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저가로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6) 간접외국납부세액 7) 간주임대료 8) 의제배당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해당 법인이 주주로서 투자하고 있는 법인이 이익잉여금 및 자본잉여금의 일부를 자본전입하여 증가된 지분을 배당으로 의제) - 자본감소, 해산, 합병 및 분할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받는 재산가액에서 주식 취득가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배당으로 의제) 9) 기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익금불산입	1) 주식발행초과금 2) 감자차익, 합병차익 및 분할차익 3)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금액 4) 이월익금(이전에 이미 익금으로 인식된 금액으로 이중계상의문제로 익금불산입) 5) 법인세환급금(법인세 또한 손금인정 X) 6) 지주회사 및 일반법인의 수익배당금액 중 일정금액7)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 자산의 평가차익 (보험업법 등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차익은 익금)

손금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와 부대비용(매출원가) 2)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 3) 인건비(일부항목제외) 4) 유형자산의 수선비(수익적 지출 부분)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중 한도 내의 금액 6) 자산의 임차료 7) 차입금이자 8) 대손금 9) 제세공과금(법에서 규정한 벌과금 등의 손금불산입 항목 제외) 10)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협회에 지급한 회비 11)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2) 자산의 평가차손 중 법소정 항목 -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금액을 신고하기로 한 법인의 재고자산평가손실 - 고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으로 파손 및 멸실(파손/멸실이 발생한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확정된 사업연도에도 손금산입 가능) - 상장법인 발행주식, 비특수관계 비상장법인 발행주식,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발행주식으로 발행법인의 부도, 회생계획인가결정, 부실징후기업, 파산이 발생한 경우 (1,000 원제외)
손금불산입	1) 주식할인발행차금 2) 잉여금의 처분을 손금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 3)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과 강제징수비, 기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기타사외유출) 4) 법에서 정한 항목을 제외한 임의의 평가손실 5) 업무무관경비(업무무관부동산 및 자산의 취득/관리에 따른 비용/유지/수선비, 소액주주가 아닌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유지비 등) 6)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채권/증권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7)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 한도초과금액 8) 접대비 한도초과액 9)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10) 인건비 항목 중 일부 손금불산입 항목

급여 및 보수 중 손금불산입	- 합명/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 대한 보수 - 비상근임원에 지급하는 보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것 - 지배주주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임직원에 대한 초과 지급 인건비
상여금 중 손금불산입	정관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한 상여금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
퇴직금 중 손금불산입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임원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는 경우: (퇴직 전 1 년간 총급여액 * 1/10 *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금액)
1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미사용금액(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업무용승용차 비용인정한도액: 1 천 5 백만원 이하 100%, 1 천 5 백만원 초과 시 1 천 5 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로 비용 인정, 사업연도 중 취득/처분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월할 조정)	

06.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구분	원칙	예외
매출 및 자산의 판매	회계상 손익 귀속시기 동일 - 상품/제품 : 인도일 - 매출 외 :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 - 위탁판매 : 수탁자의 판매시점	-
장기할부판매	인도일 (또는 결산조정 시)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인도조건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조정을 통해 익금과 손금에 반영할 수 있음
용역제공 등	진행률에 따라 인식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 년 미만의 건설 등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인도기준 가능
이자수익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단, 회사가 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익금불산입) (금융회사제외)	_
이자비용	실제로 지급한 날 또는 지급하기로 한 날 (단, 회계기준에 따라 기간경과분을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인정)	-
자산임대손익	-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 지급일 - 임대료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실제 지급일 - 결산 시 기간경과분을 미수수익으로 인식하거나 지급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기간경과에 대응하는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으로 인식	_

07.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 (시부인계산)

- 정액법 : 세무상 취득가액(취득가액 + 즉시상각의제누계액) *

상각률(1/내용연수)

- 정률법 : 세무상 미상각잔액(취득가액 - 전기감가상각누계 + 상각부인액누계 +

당기즉시상각의제액) * 상각률

- 시부인계산

구분	내용	처분
상각부인액	감가상각비 계상액 > 상각범위액	초과분 손금불산입(유보)
시인부족액	감가상각비 계상액 < 상각범위액	세무조정 없음 (전기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 추인)

08. 기부금의 한도와 계산순서

구분(계산순서)	한도액
법정기부금(1)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지정기부금(2)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비지정기부금	0
비사장기구리	(미인정 후 전액 손금불산입 -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

09. 접대비 시부인계산 구조

순서대로>			
	중빙불비 접대비	손금불산입(상여)	
접대비 회사	업무무관 접대비	손금불산입(상여 등)	
계상액	법정증빙서류 미수취 접대비	건당 3 만원 초과 (경조사비는 건당 20 만원 초과)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건당 3 만원 이하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계	ὖ용카드 매출? ∥산서 ∥금계산서 등		한도 내 금액	손금인정 (문화접대비는 일반접대비 한도 20% 범위 내 추가로 손금인정)

10. 접대비 한도액 계산

- 접대비 한도액 = 일반접대비 한도액 + 문화접대비 한도액

- 접대비 별 한도계산

- 십대미 걸 앤도게건		
구분	내 용	
일반접대비 한도	1) + 2) 1) 12,000,000 원(중소 36,000,000 원) * (사업연도 월수 / 12) 2) (일반수입금액 * 적용률) + 특정수입금액 * 적용률 * 10%	
문화접대비 한도	Min(3), 4)) 3) 문화접대비 지출액 4) 일반접대비 한도액 * 20%	

*적용률(수입금액기준)

- 100 억원 이하: 3/1,000 - 500 억원 이하: 2/1,000 - 500 억원 초과: 3/10,000

11. 손금불산입되는 지급이자		
구분 (적용순서)	세무조정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	- 관련 원천징수된 부분 : 소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비실명 채권/증권이자 (2)	- 잔액 : 손금불산입(대표자 상여)	

건설자금이자 (3)	- 건설중인자산 : 손금불산입(유보) - 완성자산 : 즉시상각의제
업무무관자산 등 관련이자 (4)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12. 충당금의 한도액과 세무조정

구분	한도액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 : 결산조정사항	Min(ㄱ, ㄴ) ㄱ.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직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 5% ㄴ. 퇴직금추계액 * 0% + 퇴직금전환금 - 세법상 퇴직급여충당금 잔액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한도액: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 > 한도액: 손금불산입(유보)
퇴직연금충당금 : 신고조정사항	Min(ㄱ, ㄴ) - 세법상 퇴직연금충당금 이월잔액 ㄱ. 퇴직급여추계액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 이월잔액 ㄴ. 퇴직연금운용자산 당기말잔액	- 퇴직연금충당금 계상액 > 손금산입 한도액: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유보) - 퇴직연금충당금 계상액 < 손금산입 한도액: 손금산입(△유보, 신고조정사항)
대손충당금 : 결산조정사항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 장부가액 * 설정률** **설정률: Max(ㄱ, ㄴ) ㄱ. 1% ㄴ. 대손실적률 = 당해 사업연도 중 대손금 / 직전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장부가액	-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초과분 손금불산입(유보) -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세무조정 없음(결산조정사항) *전기한도초과액: 전액 손금산입(△유보)

13. 퇴직금 지급 시 처리방법 (현실적퇴직 여부 별)

현실적퇴직 : 퇴직급여충당금 선 지급	비현실적 퇴직 : 업무무관가지급금 처리
- 직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 법인의 조직변경/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한 퇴직인 경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사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임원이 연임된 경우 대주주 변동 등의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경우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후 재채용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중간정산하였으나 실제로 지급하지않은 경우

14. 대손사유에 따른 처리구분

신고조정사항	결산조정사항
그. 소멸시효 완성채권 ㄴ. 회생계획인가/면책채권 ㄷ.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지, 채무자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 등으로 인한 회수불능채권 니, 부도발생일로부터 6 개월 이상 경과 수표/어음 (1,000 원 비망계정으로 제외) 다. 회수기일 6 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30 만원 이하인 소액채권 리. 조기 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 다.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비.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시.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이.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회수불능이 확인된 채권

15. 준비금의 세무조정

구분	법인세법상 준비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원칙	결산조정사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결산조정사항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회계와 일치 여부	인정함	인정하지 않음
세무조정	없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결산조정 (잉여금 처분으로 신고조정 허용)
기간효과	일정기간이 경과하거나 특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다시 익금산입	

1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 : 비정상거래 시가 범위 = Min(시가*5%, 3 억원)

- 자산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 또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 무수익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하거나 그 비용을 부담한 경우
-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게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불량자산을 차화 혹은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이나 임대료로 제공한 경우
- --> 주주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 간에 연결법인세액의 변동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의 임차료로 차용한 경우

17.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유형별 세무조정

구분	내용	세무조정
고가매입	고가매입 자산 감액	(매입가 - 시가) 손금산입(△유보)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매입가 - 시가) 손금불산입(상여, 배당 등)
	고가매입분 감가상각비 부인	손금불산입(유보)
저가양도	귀속자에 따른 소득처분	(시가 - 매입가) 익금산입(상여, 배당 등)
	의의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인식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적수 * 적정이자율 * 1/365 - 실제 이자수령액
가지급금인정이자	가지급금 제외항목	- 미지급소득에 대한 법인세 대납액 -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에 당해 법인 주식취득자금 대여액 - 경조사/학자금 대여액 - 일시적 급료의 가불금 - 귀속 불분명 소득에 대한 대표자 상여 처분의 소득세 대납액 -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여액

18. 과세표준 계산과정

<u>당기순이익</u>

- (+)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 (-) 익금불산입,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 이월결손금
- (-) 비과세소득
- (-) 소득공제

과세표준

19. 이월결손금

- 결손금: 세법상 결산손익이 순손실인 경우
- 이월결손금 :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결손금
- 결손금 공제조건
- ㄱ. 당기로부터 15 년 이내의 결손금
- ㄴ. 당기 이전까지 과세표준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은 이월결손금

20. 차감납부할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x) 세율

<u>산출세액</u>

- (-) 세액공제
- (-) 세액감면
- (+) 가산세
-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u>총부</u>담세액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21. 가산세 항목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법인세법상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현금영수증 등 허위수취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 적격증명서류 불성실가산세, 기부금영수증발급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01. 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소득세의 의의	개인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소득세의 특징	- 열거주의 과세방법(금융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 개인단위과세제도 -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제도	

- 납세자와 담세자(세금부담하는 자)가 같은 직접세
- 누진세율 적용

02. 납세의무자

구분	정의	과세범위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 과세기간 중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국내외 원천소득에 과세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국내 원천소득만 과세

03. 소득세의 계산방법 및 구조

- 계산방법

종합과세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여기에 세율을 곱하여 납부할 세금을 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포함)
분류과세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원천에 따른 소득의 종류별로 각각 세율을 곱하여 과세 (양도소득, 퇴직소득)
분리과세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 중 일정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하는 소득 (일부 금융소득 등)

- 계산구조

소득금액

(-) 소득공제

과세표준

(x) 세율

<u>산출세</u>액

(-) 공제/감면세액

<u>결정세액</u>

- (+) 가산세
- (-) 기납부세액

차감납부할세액

04. 이자소득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채권이자	- 무기명채권이자 : 실제 지급일 - 기명채권이자 : 약정일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부금이자	실제 지급일
채권/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약정에 따른 해당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수일 혹은 환매도일 - 기일 전 매수/매도의 경우 그 날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금 또는 환급금 지급일 또는 중도해지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약정일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일 -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이자지급일

05. 배당소득금액의 계산과 수입시기

- 배당소득금액 = 배당소득 총수입금액(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 Gross-up 금액 - 배당의 수입시기

구분	수입시기	
실지배당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실제 지급일 - 기명주식의 이익배당 : 잉여금처분결의일	
의제배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인정배당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수령일(원본전입하는 경우 원본전입일)	

출자공동사업자 배당 과세기간 종료일

*Gross-up (배당가산액):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소득세 신고시 세전금액으로 조정하는 금액

06.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과세방법

1) 과세유형구분

구분	내 용	
ㄱ.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비실명 금융소득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특정사회기반시설펀드 및 공모인프라펀드 배당소득	
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	-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국외 이자/배당소득) -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분배금	
ㄷ.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	이외의 일반적인 금융소득(원천징수 대상 금융소득)	

2) 종합과세여부 판단

ㄴ + ㄷ > 2,000 만원	ㄴ + ㄷ <= 2,000 만원
ㄴ + ㄷ 모두 종합과세	ㄴ. 무조건 종합과세는 종합과세 ㄷ. 조건부 종합과세는 분리과세

- 3)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의 Gross-up (배당소득 중 종합과세 대상의 이자분) 가산
-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 금액 = 이자소득 + Gross-up 제외 배당소득 + Gross-up 대상 배당소득 * 11% (단,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2,000 만원 이하는 Gross-up 대상에서 제외)

07. 사업소득(소득세)과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세) 차이

구분	사업소득(소득세)	각 사업연도 소득(법인세)
과세소득	열거주의(경상적/계속적인 것만 과세)	포괄주의(모든 소득에 과세)
과세방법	이자, 배당, 기타 등 8 개로 나누어서 과세	소득의 종류를 나누지 않음

비용처리의 차이	- 대표자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불포함 - 출자자의 자금인출 가능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 - 개인사업 대표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불가	- 대표자 인건비를 손금으로 인정 - 출자자의 자금인출 불가능 - 재고자산의 자가소비 규정 없음 - 모든 임직원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가능

08. 부동산 임대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과세
선세금 수령 시	수익금액산입액 = (선세금/계약기간의 월수) *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
간주임대료 (보중금)	(임대보증금적수 - 건설비상당액적수) * 정기예금이자율 * 1/365 - 임대사업금융수익
공공요금과 관리비	- 공공요금 실제 발생분 : 총수입금액불산입 - 관리비 : 총수입금액 산입

09.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및 비과세소득

- ㄱ.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의 운임
- 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자녀가 받는 장학금(학자금)과 무주택근로자가 받는 주택보조금

(일반지급 장학금(학자금)은 근로소득)

- ㄷ. 사회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조금
- 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연수를 받게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교육훈련비
- ㅁ. 복리후생적 급여
- 주주가 아닌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 등이 받는 사택제공 이익(소액주주임원 포함)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저리대여 이익
- 단체순수보장성 보험 및 단체 환급부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 만원 이하

10. 비과세소득

구분	항목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숙직료 또는 여비로 실비보상 성격의 지급액 - 월 20 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휴업/장해 유족급여 등 - 20 만원 이내 취재/벽지수당 -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받는 급여 - 6 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 만원 이내
국외근로소득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월 100 만원 이내(원양어업/국외항행 300 만원 이내, 건설현장, 감리업무, 설계업무 등 300 만원 이내)
특정근로소득	월정액급여가 210 만원 이하이고 총급여액이 직전 과세기간 3,000 만원 이하인 특정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연간 240 만원 한도)
식사대 등	-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받는 경우 식사 및 기타 음식물 - 근로자가 식사 및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월 10 만원 이하의 금액
기타	- 실업급여 - 특정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관련 법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근로장학금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

11. 연금소득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연금소득 총수입금액 - 연금소득공제(한도 900 만원)

12.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필요경비 예외사항 (원칙: 적정한 증빙을 갖추어야만 적정비용으로 인정)

예외사항 (예외사항 (증빙이 없더라도 60 ~ 90%까지 필요경비 인정	
80%	- 공익법인이 시상하는 상금 및 다수가 순위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 주택입주 지체상금 -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금액이 2 천만원 이하인 경우 (금액이 커질수록 필요경비 인정비율 누진적으로 감소)	
60%	-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원고료 및 인세) -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 설정/대여소득 - 일시적인 강연료, 자문료 등 - 광업권/산업재산권 등의 권리의 양도 및 대여 소득 - 일시적인 대여 중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대여하는 일정규모 (연 수입금액 500 만원 이하)	
기타	-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1 억원 이하 90%, 1 억원 초과 80%) (단, 보유기간이 10 년 이상인 경우 90%)	

13. 기타소득 과세방법

200 1 1 1 1 0 1		
원칙		종합과세
예외	선택적 분리과세	- 기타소득금액 합계 300 만원 이하 - 계약금이 대체된 위약금, 배상금 - 종업원이 근로와 관계없거나 퇴직 후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무조건 분리과세	복권당첨소득 등

14.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결손금 공제

사업소득의 결손금	- 근로 -> 연금 -> 기타 -> 이자 -> 배당 순 공제 - 공제 후 남은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
부동산임대업의 결손금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이월

15.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요건

- 기본공제 : 1 인당 150 만원 (배우자, 60 세 이상 직계존속, 20 세 이하 직계비속, 20 세 이하 또는 60 세 이상 형제/자매)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한 사유를 충족하는 자

	구분	요건	공제금액
--	----	----	------

경로우대공제	70 세 이상	100 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	200 만원
부녀자공제	- 종합소득금액이 3,000 만원 이하 -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배우자가 있는 여성	50 만원
한부모공제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 만원

1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금액	공제한도
공제금액 = ㄱ+ㄴ+ㄷ+ㄹ+ㅁ - ㅂ에 해당하는 금액	<u>공제한도 = Min(한도, 총급여액의</u> <u>20%)</u>
 그.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30% 나. 전통시장/대중교통사용분 * 40% 다.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분 * 30% (총급여 7 천만원 이하인 자에 	- 총급여액이 7 천만원 이하 : 연간 300 만원과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100 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금액
한함) ㄹ. 신용카드사용분(ㄱ~ㄷ 사용금액 제외) * 15%	- 총급여액 1.2 억 이하 : 연간 250 만원
 다. 당해년도 소비금액(ㄱ~ㄹ 합계) 중 작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총급여액 1.2 억 초과 : 연간 200 만원
ㅂ.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이건 안외울란다)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 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 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한도초과 시 추가공제 Min(전통시장사용분 * 40%, 100 만원) + Min(대중교통사용분 * 40%, 100 만원) + Min(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 관 사용분 * 30%, 100 만원) + Min(당해년 소비증가분 공제금액, 100 만원)

15% +	
도서/신문/공연비/박물관/미술관사용	
분 * 30%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사용분) *	
40%	
1070	

17.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금융소득이 포함된 경우

구분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액 계산
금융소득이 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 + 조건부종합과세 금융소득 > 2 천만원	Max(a, b) a. (과세표준 - 2 천만원) * 기본세율 + 2 천만원 * 14% b. (과세표준 - 금융소득합계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합계액 *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존재	(과세표준 - 금융소득합계액) * 기본세율 + 금융소득합계액 * 원천징수세율

※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총수입금액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이 제외된 금액
(-) 필요경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음 배당소득은 귀속법인세를 가산함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차감 근로소득은 필요경비차감 대신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은 필요경비차감 대신 연금소득공제
종합소득금액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합산
(-)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종합소득과세표준	
(x) 세율	기본세율(초과누진세율)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액감면/공제	세액감면 -> 이월 불가 세액공제 -> 이월 가능 세액공제
결정세액	
(+) 가산세	
총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중간예납, 원천납부, 수시부과, 예정신고납부
차감납부세액	

18. 퇴직소득 계산

1) 계산구조

<u>퇴직소득</u>금액

(-) 퇴직소득공제(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

퇴직소득과세표준

(x) 기본세율 * 근속연수 / 12

퇴직소득산출세액

2) 과세표준

구분	계산방법
환산급여의 계산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퇴직소득과세표준	환산급여 - 환산급여에 따른 차등공제액

3)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산출세액 = 퇴직소득과세표준 * 기본세율 * 근속연수 / 12

19. 원천징수대상 및 세율

구분		원천징수의무	세율
	이자	0	14% (비영업대금 25%)
	배당	0	14%
	사업	X	_
	특정사업소득	0	수입금액의 3% (봉사료 5%)
	근로	0	간이세액표
소득세	연금	0	간이세액표 등
	기타	0	20% (복권 3 억 초과 30%) (종교인소득 별도 간이과세표 적용)
	퇴직	0	
	양도	X	-
법인세		이자소득 등 지급 시	14%

부가가치세법

01.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록 대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신청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u>20 일 내</u> (신규 사업 개시인 경우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 가능)

- 매입세액불공제 : 원칙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매입세액 불공제.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후 20일 이내에 등록신청한 경우 과세기간 개시일(7/1)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 매입세액은 공제 - 미등록가산세 발생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과료] 지난
---	------

02. 납세지 (원칙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직매장	별개의 사업장(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재화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
하치장	사업장 아님
임시사업장	기존사업장에 포함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신청하여 적용 영향: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총과랗여 납부 (납부만 총괄, 신고는 사업장 별) 제조장에서 직매장으로 재화를 반출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03. 간주공급(재화공급의 특례)

- 간주공급이란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목적상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
- 간주공급사례

사례	설명
자가공급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및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소비하는 것

개인적 공급	-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및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본인/사용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 *개인적 공급이 아닌 것: 매입세액불공제 재화예) 작업복/작업모/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1 인당 연간 10 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사업적 증여	-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및 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로 매입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것 *사업적 증여가 아닌 것 - 주된 거래에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포함 - 견본품(무상인 경우) - 매입세액불공제 재화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할 때 남은 재화

04.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	
용역의 공급 사례	 건설업에 있어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제조가공업자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단순 가공만 해주는 경우 산업/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05. 재화의 공급시기

구분	내용	공급시기
일반적	재화 이동이 필요	인도일(일반적 상품, 제품)
	재화 이동이 불필요	이용가능일(부동산, 무체물)

	기타	공급확정일
현금판매/외상판매	재화의 인도일 or 이용가능일	
	- 할부 : 대가를 2 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	
장기할부판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받은 때 X)
	*기준 : 인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일까지 1 년 초과인 경우	
완성도지급기준	재화의 완성비율에 따라 대금을 지급	
중간지급 조건부 판매	재화 인도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계약금 지급일 ~ 잔금 지급일이 6 개월 이상)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단, 재화의 인도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 빠른 경우 그 날)
계속적 공급	전력/가스 등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수출하는 재화	선적일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	인도일	

※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담보제공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부동산 등을 제 경우	공하는
---	-----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것은 승계하지 않아도 됨)
조세의 물납	사업용 자산을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에 따라 물납하는 경우
공매/경매	공매 또는 강제경매에 의하여 인도/양도하는 경우
수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06. 과세표준의 범위와 미포함 사항

- 1) 원칙 :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일반적으로 * 100/110 통해 계산)
- 2) 상황에 따른 과세표준

구분	과세표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제공한 재화/용역의 시가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낮은 대가 받음/받지 않은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폐업 시 잔존재화	폐업 시 남아있는 재화의 시가

- 3)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 매출에누리와 매출환입, 매출할인
- 공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 공급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연체이자
- 재화/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 4)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 대손금
- 판매장려금
- 하자보증금
- 5)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가격 + 관세 + 개별소비세 +

교통/에너지/환경세 + 주세 + 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07.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대손세액공제

대손세액공제의 의의	매출채권 또는 미수금이 대손되어 거래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완화	
인정되는 대손사유	파산, 강제집행, 사망, 실종, 상법 등 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 부도발생일로부터 6 개월이 경과된 어음/수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금액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 (10/110)	
대손확정기한	공급일로부터 10 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공제요건이 확정된 것에 한함)	
절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대손세액공제 적용 (예정신고 X)	

08. 불공제되는 매입세액

구분	내용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부실기재분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단,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가능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실기재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거래처별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미기재의 경우 단,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공제가능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	사업자등록신청 전 매입세액 단,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 일 <u>이내</u> 에 등록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는 공제 가능
토지 또는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매입세액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 공제대상이 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숭용차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다고 봄 택시 및 렌터카 등 영업용은 매입세액공제 가능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접대비/기밀비/교재비 등 접대비 유사비용

09. 예외적 공제 허용

- 공급시기 이후 <u>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u>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

-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거래사실이 확인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u>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u>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경정청구하거나,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 공급시기 이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u>실제 공급시기가 30 일 이내에</u> 도래하고 거래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

10.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하여 제조/가공한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면세의 중복효과 해소
- 계산

구분		공제율	
음식점업	일반사업자	4 억원 이하	9/109
		4 억원 초과	8/108
	법인사업자		6/106
과세유홍업		2/102	
제조업(개인, 중소기업)		4/104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한 경우		10/110	
기타		2/102	

- 적용한도
- 법인사업자 : 40%

-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 : 50 ~ 65%
- 개인사업자 중 음식점 외 업종 : 45 ~ 55%

11. 세금계산서의 발급

77. 1 D / 1 C 1	1 6 8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 - 미등록자는 발급할 수 없음
발급시기	원칙 :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
발급시기의 예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시점을 발급시기로 봄)	1) 선교부 - 대가를 먼저 받고 공급시기가 되기 전의 다른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u>7일 이내</u>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 공급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u>7일 경과 후</u>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세금계산서 발급 후 <u>동일 과세기간 이내</u> 에 대가를 받는 경우 *단, 세금계산서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2) 후교부 -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u>다음날 10일</u>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12.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구분	필요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기재사항	- 공급자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연월일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공급품목, 단가와 수량 인도연월일 거래의 종류
미기재 시 영향	세금계산서 불인정	영향 없음

13.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위탁판매	수탁자가 위탁자를 공급자로 발급
리스자산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직접 세금계산서 발행

공동매입	전력/가스의 명의자와 소비자가 다른 경우 전기사업자가 명의자에게, 명의자는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세금계산서 분실	- 공급자 보관용 분실 : 사본 작성 - 공급받는 자 보관용 : 공급자가 확인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

14.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공급

- 1) 택시운송, 노점, 행상, 무인판매기를 이용한 재화의 공급
- 2) 소매업 또는 목욕/이발/미용업
- 3) 자가공급/개인적공급/사업상 증여/폐업 시 잔존재화(판매목적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4) 영세율적용대상

- 수출하는 재화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외국항행 용역
- 간주임대료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는 경우

15. 영수중 포함 범위 및 발급의무자

영수중에 포함되는 범위	- 금전등록기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승차권 - 가스요금영수증	
영수중 발급의무자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합계액이 <u>4,800 만원 미만</u> 인 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전문적인적용역 공급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일반과세자 중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16.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u>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u>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 부실기재 등 :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과실로 적혀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세금계산서 미발급, 허위발급, 지연수취/공급시기 오류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u>미제출 및 부실기재</u> - 지연제출 : 예정신고 시 제출하지 않고 확정신고 시 제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공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나 <u>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u> <u>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u> - 공급가액 과다 기재 -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로 경정 시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을 공제	

17. 간이과세의 의의와 범위

- 의의 : 영세사업자의 납세편의와 세부담 경감

- 범위: 개인사업자로 직전연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8,000 만원에

미달

간이과세의 배제	- 사업자가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간이과세배제사업 폐지 시 간이과세로 전환)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특정 <u>부동산임대업</u> 등의 업종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u>두 사업장의 공급대가</u> 합계액이 8,000 만원 이상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u>4,800 만원 이상인</u> <u>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u> -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
신규사업자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	8,000 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재무회계]

재무보고와 재무제표

01. 유동/비유동 구분

- 유동자산/부채 이외의 자산/부채는 비유동자산/부채로 분류

10-16/1-11 11-1-16/1-16	0.16/11/20 61
유동자산	유동부채
- 기업이 정상영업주기 내에 실현될	- 정상영업주기 내에 결제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거나 정상영업주기 내에	예상
판매하거나 소비될 의도가 있음	
	- 단기매매 목적
- 단기매매 목적	
	-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결제될
-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내에 실현될	것으로 예상
것으로 예상	
	- 보고기간 후 12 개월 이상 부채의
-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으로써 사용에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대한 제한 기간이 보고기간 후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음
12 개월 이상 아님	

02. 기타포괄손익 항목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재평가손익
- 해외사업장 환산손익
- 현금흐름위험회피수단의 파생상품평가손익변동
-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법기타포괄손익변동
- 종업원 급여 규정에 따라 인식된 보험수리적 손익
- 유,무형자산의 재평가손익

자산

0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계산

상품(외부구입)	매입가격 + 매입관련 직접원가(수입관세, 제세금, 매입운임, 하역료, 직접관련원가) - 매입할인
제품(자가제조)	원재료의 매입원가 + 전환원가(직접노무원가 + 제조간접원가)

02. 기말재고자산 계산방식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판매가능상품(기초상품 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상품재고수량	판매가능상품(기초상품 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상품재고수량(실사) = 당기판매수량

03. 회계기간 중 재고자산의 취득단가가 계속 상승할 경우

- 1) 기말재고자산의 크기: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 2) 매출원가의 크기: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 3) 당기순이익의 크기: 선입선출법 > 가중평균법 > 후입선출법

04. 저가법 평가 시 재고자산 가액

- 재고자산 = Min(취득원가, 순실현가능가치*)
- *순실현가능가치 = 예상판매가격 예상되는 추가 부대비용 및 판매비용

05. 보유목적에 따른 순실현가능가치 추정

보유목적	재고자산 분류	순실현가능가치
판매	상품, 제품, 재공품	예상판매금액 - 판매부대비용 - 추가 완성원가
제조를 위해 사용	원재료, 기타소모품	현행대체원가
확정판매계약		계약가격

06. 원재료, 기타소모품의 저가법 평가

완성될 제품이 원가 이상으로 판매될 것으로 예상	원재료, 기타소모품은 저가법 평가하지 않음
제품의 원가 > 순실현가능가치	- 원재료를 저가법 평가 - 원재료를 저가법 평가할 때는 현행대체원가(현재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를 순실현가능가치 대신 사용

07. 토지와 건물의 일괄구입 시 취득원가

	- 취득원가를 개별자산의 공정가치비율로 안분
토지와 건물을 모두 사용할 목적인 경우	- 토지 건물 중 하나의 공정가치만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은 공정가치로, 나머지 자산은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은 토지, 건물에 개별적으로 배분

	- 구입대가 모두를 토지의 취득원가로 처리
토지만 사용할 목적인 경우	- 건물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
7	- 폐자재 등의 순매각금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서 차감

08. 감가상각비 계산

감가상각방법	내용
정액법	- 매기 일정한 금액 상각
	- <u>정액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u> <u>내용연수</u>
정률범	- 내용연수 초기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하다가 내용연수 후기로 갈수록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 (가속상각법)
	- 정률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상각률
	- 유형자산의 생산량에 비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
생산량비례법	- 생산량비례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당기생산량 / 추정 총생산량)
연수합계법	- 연수합계법 상각률 = 특정연도 초의 잔존내용연수 / 내용연수의 합계
	- 연수합계법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 <u>상각률</u>

09. 유형자산 후속측정에서 재평가모형과 원가모형의 장부가액 차이

모형	계산
원가모형	취득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재평가모형	재평가시점의 공정가치 - 재평가 이후의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
-------	---

10. 유형자산 재평가손익의 희계처리

구분	내용	
재평가이익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재평가잉여금(기타포괄손익) 인식
	재평가손실이 있는 경우	재평가손실과 우선 상계 후 기타포괄손익인식
재평가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재평가손실(당기손익) 인식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경우	재평가잉여금과 우선 상계 후 당기손실로 인식
재분류조정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하는 경우 <u>이익잉여금으로 대체</u>	
재평가금액으로 수정하는 방법	비례수정법	감가상각누계액과 총장부금액을 비례적으로 수정
	전액제거법	총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 전부 제거

11. 유형자산 재평가모형의 손상차손과 손상차손환입

구분	인식
손상의 정후가 있는 경우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u>기존에 인식한</u> <u>재평가잉여금과 우선 상계</u> 한 후 손상차손인식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손상차손 인식하지 않음

손상차손환입의 인식	- 회수가능액 > 장부금액: <u>기존에 인식한</u> <u>손상차손까지 당기손익으로 인식</u> 하고 초과금액을 재평가잉여금으로 인식
------------	---

12. 자본화차입원가의 종류

종류	내 용
특정차입금	<u>적격자산 취득 목적</u> 으로 직접 차입
일반차입금	일반 목적 차입 자금 중 적격자산 취득에 소요된 것으로 보는 차입금

13. 자본화차입원가의 결정

구분	계산
1 단계: 특정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계산(한도: 없음)	(특정목적차입금 * 이자율 * 자본화기간) - 일시운용투자수익
2 단계 : 연평균지출액 계산	지출액 * (지출일로부터 자본화종료시점까지의 기간 / 12)
3 단계: 일반목적차입금의 자본화차입원가 계산 (한도: 실제 발생한 일반차입금 차입원가)	(적격자산 연평균 지출액 - 특정목적차입금지출액) * 자본화이자율* *자본화이자율 = 당기 일반목적차입금 이자비용 / 당기 일반목적차입금 연평균 금액

14. 무형자산의 측정

구분	내 용
무형자산을 개별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원가	구입가격(매입할인과 리베이트 차감, 수입관세와 환급불가의 제세금포함) +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사업결합으로 취득	<u>식별가능성만 충족하는 경우 항상 인식기준을</u> <u>충족</u> 하는 것으로 보고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음

	ex) 브랜드, 고객목록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브랜드, 고객목록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
	- 연구단계 :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개발단계: 개발 <u>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u> <u>무형자산으로 인식</u> 하고 그 외의 경우는 기간비용으로 인식

15. 투자부동산의 계정대체

구분	장부가액 인식	내용
투자부동산 -> 자가사용부동산 or 재고자산		(변경시점 공정가치 - 장부금액)은 당기손익 인식
자가사용부동산 -> 투자부동산	변경시점의 공정가치	- 변경시점까지 감가상각 실시 - (변경시점 공정가치 - 장부금액)의 <u>이익은</u> 기타포괄손익, 손실은 당기손익 인식 (유형자산 재평가와 동일)
재고자산 -> 투자부동산		(변경시점 공정가치 - 장부금액)은 당기손익 인식

건설중인자산 ->	(대체시점의 공정가치 - 장부금액)은
투자부동산	당기손익 인식

16. 금융자산의 분류

구분	정의	평가손익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u>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이나</u>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 적용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의 선택: 회계불일치 제거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사업모형 및 현금흐름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사업모형: <u>계약상 현금흐름</u> 수취,매도 - 현금흐름: <u>계약상 현금흐름이</u> 원리금으로만 구성 - 단기매매 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으로 최초인식시점에 선택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사업모형 및 현금흐름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 사업모형 : <u>계약상 현금흐름 수취</u> - 현금흐름 : <u>계약상 현금흐름이</u> 원리금으로만 구성된 경우	

17. 채무상품과 지분상품의 금융자산 분류

구분	현금흐름 특성	사업모형	분류
채무상품	계약상 현금흐름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	상각후원가

	원리금으로만 구성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매도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그 밖의 목적	당기손익- 공정가치
	계약상		원칙 :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지분상품	현금흐름이 원리금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음	사업모형을 고려하지 않음	예외 : <u>단기매매</u> 항목이 아닌 경우 최초취득시점에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 가능
파생상품	파생상품 관련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분류		

18. 금융자산의 후속측정 (원칙 : 공정가치 적용)

분류		측정방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평가
		-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
		- 공정가치 평가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지분증권	-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 인식 (처분 시 당기손익 환원 X)
	채무증권	- 공정가치 평가
	세구궁전 -	- 장부가와 공정가치의 차액은

		기타포괄손익 인식 (처분 시 당기손익 재분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유효이자율법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

19. 금융자산 재분류

재분류 전	재분류 후	재분류 회계처리	
당기손익-공정가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재평가일에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재분류일의 공정가치)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 평가손익을 금융자산과 상계 제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최초 취득시점부터 <u>상각후원가로 측정한</u> <u>것처럼 회계처리</u>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대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후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공정가치 평가 후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	
		- 유효이자율은 최초 취득일 것을 사용하 고 <u>조정하지 않음</u>	

부채와 자본

01. 복합금융상품의 예

종류	내용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u>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보통주 발행을 청구</u> 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전환우선주	전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선주로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보통주로 전환되는 우선주
교환사채	사채발행자가 보유하고 있는 <u>유가증권과 교환을</u>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02. 복합금융상품 회계처리 원칙

원칙	금융부채 부분과 지분상품 부분을 분리하여 인식	
금융부채 부분	일반사채처럼 유효이자율법으로 최초의 장부가로 인식	
지분상품 부분	복합금융상품의 발행금액에서 금융부채 부분을 차감한 잔액	

03. 전환사채용어

구분	내용
상환할증금지급조건	주식으로 전환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투자자에게 보상차원에서 추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
전환권대가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중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을 제외한 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의 가치 전환사채의 발행금액 - 일반사채일 경우 발행금액
전환권조정	전환권가치 + 사채상환할증금

04. 전환권 행사

- 전환사채 주식의 발행금액 =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 전환권대가

- 전환사채의 장부금액 = <u>액면금액 + 사채상환할증금 - 전환권조정 미상각잔액 -</u> 사채할인발행차금

05. 전환사채의 조기상환, 재매입

구분	내용
조기상환, 재매입을 위해 지급한 대가와 거래원가	거래의 발생시점의 부채요소와 <u>자본요소에 배분</u>
대가를 배분한 결과로 발생되는 손익	- <u>부채요소</u> 관련 : <u>당기손익</u> 인식 - <u>자본요소</u> 관련 : <u>자본</u> 인식

06. 충당부채

-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과거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현재의무(법적의무 or 의제의무)로서 지출의 시기나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
- 재무상태표에 부채로 인식

07. 우발부채

-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했으나, <u>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존재가 확인</u>되는 잠재적 의무 - 과거사건에 의해 발생한 현재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지가 않거나, 그 가능성은 높으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08 츳닷부채 우발부채의 인식

자원유출가능성	금액추정가능성	
사원市室가중성 	신뢰성 있게 추정가능	추정불가능
가능성이 높음	충당부채 인식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음	우발부채로 주석 공시	수발부채로 주석 공시
가능성이 아주 낮음	공시하지 않음	

09. 자본잉여금

구분	내용	
	- 주식발행가액 중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주식발행초과금	- 회사자본에 전입하거나, 결손금 보전목적 처분 가능	
감자차익	- 주식회사의 자본을 감소시킬 때 <u>감소된</u> <u>자본금액이 주식을 환급한 금액 또는 결손의 보전을</u> <u>한 금액을 초과</u> 하는 금액	
	- 유상감자(실질자본감소), 무상감자(순자산 불변, 형식상감자)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 처분 시 재발행가격 > 자기주식 매입가격	

수익과 비용

01. 수익인식 5 단계 모형

측정	단계	기준
		-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승인하고 각자의 <u>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u>
		- 이전할 재화나 용역과 관련된 각 당사자의 <u>권리를 식별</u>
		- 이전할 재화나 용역의 <u>지급조건을</u> <u>식별</u>
수익인식의 대상 식별	1. 고객과의 계약 식별	- 계약에 <u>상업적 실질 있음</u>
		- 재화나 용역에 대한 <u>대가의 회수</u> <u>가능성 높음</u>
		- 판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대가를 수령한 경우, 원칙은 부채로 인식하나 <u>대가의 대부분을 받아</u> 환불되지 않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익으로 인식

	2. 별도의 수행의무 식별	-
수익의 측정	3. 거래가격의 산정	성격과 가치가 유사한 것의 교환인 경우 거래로 보지 않고 <u>성격과</u> <u>가치가 상이한 교환의 경우 수취한</u> <u>재화의 공정가치</u> 로 수익 인식
	4. 각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수익의 인식	5. 각 수행의무 충족 시 수익인식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고객이 자산을 통제) 수익을 인식

02. 비용의 계약체결 중분원가

계약체결 중분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을 원가
회계처리	- 해당 원가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 : <u>자산으로 인식 후</u> <u>관련 수익 인식</u> 하여 상각
<i>최계</i> 시니	-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원가 또는 고객에게 원가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u>발생시점 비용 인식</u>

03. 수익인식사례(시점)

	- 수탁자가 제품을 통제하는 경우 : 판매 시
위탁매출	- 수탁자가 제품을 통제하지 않는 경우 : 중개수수료 수익 인식
반품조건부 판매	- 반품으로 기업이 권리를 갖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환불부채로 인식하고 반품으로 회수할 자산은 회수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반품자산으로 인식
	- 반품액을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경우 : 반품권이 소멸되는 때
할부판매	- 장/단기 구분 없이 인도시점

	-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매출이익과 이자수익을 구분하여 <u>매출이익은 재화가 인도되는</u> <u>시점</u> 에, <u>이자수익은 대가를 회수하는 기간 동안</u>
) W =1	- 판매시점 : <u>할인액 반영 순현금유입액을</u> 선수금(부채)인식
상품권 	- 상품판매, 용역제공시점 : <u>회수된 상품권의 순발행금액</u> +/- 추가현금수령액(지급액)
	- 원칙: 설치용역이 유의적으로 재화와 별도 구분되는 수행의무인지 구분하여 회계처리
설치 조건부 판매	- 설치용역이 별도 수행의무로 식별되는 경우 : 각각을 별도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인식
	- 유의적 용역제공이 없으면 별도 분리
시용판매 고객이 매입의사를 표시한 시점	
	- 객관적 판단 가능 : 형식적인 고객 인수 절차와 관계 없이 수익인식
고객의 인수 (검수조건부 판매)	- 객관적 판단 불가능 : 고객이 인수하는 시점에 수익인식
	- 설치수수료는 진행률에 따라 수익 인식

04. 고객충성제도의 회계처리

구분		수익인식	수익금액
판매기업이	직접 보상	보상 제공시점	이연수익 총액
제 3 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회수	보상의무 이행시점	이연수익 총액
보상제공	제 3 자를 대신하여 회수	제 3 자가 보상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시점	수수료 순액

05. 누적공사진행률

- 당기 말까지 발생된 계약원가 누적액 / 당기 말 현재 추정 총계약원가

06. 계약수익과 계약원가 인식

- 당기 계약수익 = $\frac{\sqrt{2}}{\sqrt{2}}$ 전체 계약금액 * $\frac{\sqrt{2}}{\sqrt{2}}$ + $\frac{\sqrt{2}}{\sqrt{2}}$ 전기까지 인식된 $\frac{\sqrt{2}}{\sqrt{2}}$ 무적계약수익금액
- 당기 계약원가 = 전체 계약원가 * 누적공사진행률 전기까지 인식된 누적계약원가금액

07. 건설계약의 회계

70 C C C 7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미청구공사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	자산으로 인식
초과청구공사 (미성공사 < 진행청구액)	부채로 인식
	- 미완성공사(수행한 공사)를 의미 (재공품 성격과 동일)
미성공사	- 누적발생계약원가 + 누적이익인식 - 누적손실인식
진행청구액	계약대금의 누적청구액

08. 퇴직급여의 종류와 특징

구분	확정급여제도(DB)	확정기여제도(DC)
공통점	근속기간 중 금융기관에 불 종업원에게 금융기관이 퇴	
불입액	변동가능	확정
퇴직금지급액	확정	변동가능
고용주의 추가의무	존재 가능	없음

09. 확정급여채무와 사외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구분	재측정	차이인식 항목
확정급여채무	보험수리적 효과 반영	기타포괄손익

사외적립자산 실제 투자수익 반영	ス	수익 반영
-------------------	---	-------

10.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

10 1 12 4 0 1 17 12 4 0 1 11 1 4 0 12 1	
보상원가	기업이 주식기준보상거래를 통해 <u>거래상대방에게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u> 원가
종업원 및 유사용역 제공자로부터 제공받음	지분상품의 공정가치
종업원이 아닌 자로부터 제공받음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보상수량의 산정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기대가득수량)
보상원가 계산	부여일의 공정가치(불변)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변동)
매기 인식해야 하는 보상원가	부여일의 공정가치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 - 전기까지 인식한 보상원가

11. 보상원가의 가득기간

보상원가가 부여 즉시 가득되는 경우	부여일에 보상원가 즉시 인식
보상원가가 특정기간 용역제공 후 가득되는 경우	- 미래 용역제공기간에 보상원가 인식 -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배분하여 인식

1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 산정

보상원가의 인식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의 재측정	-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 재측정
	- 공정가치의 <u>변동액은 당기손익</u> 으로 회계처리

보상수량의 산정	가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분상품의 수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 (기대가득수량)
보상원가 계산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변동)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변동)
매기 인식해야 하는 보상원가	보고기간 말 공정가치 * 가득될 지분상품의 수량예측치 - 전기까지 인식한 보상원가

13. 법인세의 일시적 차이

- 재무상태표상 장부금액과 세무회계상의 세무기준액과의 차이
- 가산할 일시적 차이 : 미래기간의 <u>과세소득을 증가</u>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이연법인세부채를 발생 (△유보)
- 차감할 일시적 차이 : 미래기간의 <u>과세소득을 감소</u>시키는 효과를
- 가지며 이연법인세자산을 발생 (유보)

기타사항

01. 회계변경의 유형 (정책의 변경 vs 추정의 변경)

구분	내용	회계처리방법
	- 원칙 : 임의 변경 불가 - 예외 : 회계기준에 정책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을	- 원칙 : 소급적용 - 예외 : <u>누적효</u> 과를
회계정책의 변경	반영한 재무제표가 정보이용자들에게 신뢰성 있고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예) 유형자산의 측정기준 변경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변경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 전진적용
회계추정의 변경	- 추정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함 예) 감가상각비 방법 변경	전진적용
	수취채권의 대손상각률 변경 유형자산의 내용연수 변경	

02. 오류수정의 회계처리

내용	회계처리
	- 원칙 : 소급적용
non GAAP -> GAAP	- 예외 : 누적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날부터 새로운 회계정책 전진적용
	- 오류가 발생한 과거기간의 재무제표가 비교표시 된 경우 해당 재무제표 재작성
	- 오류가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 이전에 발생된 경우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과거기간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의 기초금액 재작성
	- 당기 중 발견한 당기 오류는 재무제표 발생승인일 이전 수정

03. 기본주당이익

- 기본주당계속영업이익(손실) = 보통주계속영업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기본주당순이익(손실) = 보통주당기순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1)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계산 (분모)

구분	주식수 기산일	고려사항
우선주	고려하 지 않음	총주식수에서 우선주식수를 공제하여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를 계산
자기주식(보통주)	고려하 지 않음	자기주식 취득부터 매각할 때까지 제외
무상증자/주식배당/주식분할/주식병 합	<u>기초부</u> 터 포함	기중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해당 유상증자분은 유상신주의 납입일에 실시된 것으로 간주

유상증자	납입일	공정가치 미만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발행된 보통주는 공정가치 유상증자 주식분과 무상증자 주식분으로 구분
전환금융상품	<u>실제</u> 전환일	보통주로 전환되어야 하는 전환금융상품은 계약체결시점부터 보통주식수에 포함

※자본의 변동

구분	주식배당	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총액(순자산액)	불변	불변	불변	불변
자본금	증가	증가	불변	불변
잉여금	감소	감소	불변	불변
주당 액면가액	불변	불변	감소	증가
발행주식수	증가	증가	증가	감소

2) 보통주당기순이익과 보통주계속영업이익 계산 (분자)

보통주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차감
보통주계속영업이익	계속영업이익에서 우선주 배당금 차감
우선주배당금	배당선언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금 차감

04. 희석주당이익

- 희석주당계속영업이익(손실) = 희석계속영엽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식수)
- 희석주당순이익(손실) = 희석당기순이익(손실) /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식수)
- 잠재적 보통주(분모)

구분	내용
	-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등에 적용
전환가정법	- 희석성 잠재적 보통주는 기초에 전환 또는 행사된 것으로 봄
	- 잠재적주식수 = 발행될 보통주식수
	- <u>옵션과 주식매입권</u> 등에 적용
자기주식법	- 옵션과 주식매입권 등의 행사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해서 주식을 지급했다고 가정
	- 잠재적 주식수 = 발행될 보통주식수 - 취득가능 <u>자기주식(평균시장가격으로 취득했다고 가정)</u>

05. 지분법용어

05. 시문협중의	
	- 투자자가 피투자자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 지분율기준 : 직간접적으로 피투자자의 의결권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유의적인 영향력	- 실질영향력기준 : 피투자회사 의결권의 20% 미만을 소유하여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예) 실질영향력기준 - 피투자자의 이사회나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참여 - 배당이나 다른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 투자자와 피투자자의 사이에 중요한 거래 관계가 있음 - 경영진의 상호교류 - 필수적 기술정보의 제공
관계기업	- 투자자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파트너십 같이 법인격이 없는 실체를 포함
	- 종속기업 혹은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는 속하지 않음

06. 지분법 회계 최초 적용시점의 차이

영업권	<u>상각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산의 장부금액</u> 에 포함
염가매수차익	<u>취득시점의 지분법 이익</u> 에 포함
순자산공정가치와 장부금액의 차이	해당 자산, 부채의 피투자자의 처리방법에 따라 <u>상각 또는 환입</u>

07. 지분변동 발생항목

구분	적용방식
피투자자의 당기순이익(손실)발생	당기순손익으로 계상(지분법 손익)
투자회사의 배당금 수령	투자주식의 원본의 회수로 보아 배당금 결의시점에 수령할 배당금액을 관계기업 투자주식에서 차감
투자회사의 기타포괄손익의 증감으로 인한 변동	투자주식의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변동으로 인식

08. 외화거래의 보고기간 말 환산 (환율변동효과)

구분	정의	보고기간 말 회계처리
회폐성 항목	확정되었거나 결정 가능할 수 있는 화폐단위의 수량으로 받을 권리나 지급할 의무	- 마감환율로 환산 - 외환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
비화폐성 항목	재고 자산, 유형 고정 자산 따위와 같이 <u>화폐액으로</u> <u>확정되지 않으며</u> 시일의 경과나 물가 변동에 따라 그 가액이 달라지는 자산이나 부채 항목	- 역사적 원가로 측정: 거래일의 환율 - 공정가치로 측정: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 - 공정가치평가손익이 당기손익인 경우 외환차이도 당기손익 인식, 기타포괄손익인 경우 외환차이도 기타포괄손익 인식

09. 외화거래의 결제시점 (환율변동효과)

구분	외환차이 계산 및 회계처리	
	- 회계처리 : 외환차이가 발생하는 회계기간의 손익으로 인식	
화폐성 항목	- 외환차이 계산 한 회계기간 중 발생 : 외화금액 * (결제일환율 - 거래일환율) 발생하고 난 다음 회계기간 이후 결제 : 외화금액 * (결제일환율 - 직전 보고기간말 외화환산시 적용환율)	
비화폐성 항목	- 기타포괄손익 인식 : 환율변동효과도 기타포괄손익 인식	
	- 당기손익 인식 : 환율변동효과도 당기손익 인식	

10.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기능통화와 표시통화로의 환산방법

환산대상	적용환율
재무상태표의 자산과 부채	해당 보고기간 말의 마감환율
포괄손익계산서의	- 해당 거래일의 환율
수익과 비용	- 유의적으로 차이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의 평균환율 사용
위 두 가지 환산에서 생기는 외환차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해외사업장환산차익)

11. 파생상품 계약형태

구분	내용
선도거래	- 미래 일정시점에 약정된 가격에 의해 계약상의 특정 대상을 사거나 팔기로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한 거래
	- 계약의 표준화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시장에서

	계약을 찾기 어려움
	- 선도계약이 불이행될 위험 부담
선물거래	- 수량, 규격, 품질 등이 표준화되어 있는 특정 대상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해 미래 일정시점에 인도, 인수할 것을 약정한 계약으로서 조직화된 시장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거래되는 것 - 증거금(담보적 성격으로 계약당 반드시 예치해야 하는 금액), 일일정산제도를 수행하여 선도거래의 계약이 불이행될 위험부담 완화
스왑	특정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일정한 현금흐름을 다른 현금흐름과 교환하는 연속된 선도거래
옵션	- 계약당사자 간에 정하는 바에 따라 <u>일정한 기간 내에</u>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외화나 유가증권 등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에 대한 계약 - 권리의 유형 (콜옵션 - 매수 / 풋옵션 - 매도)
	- 권리의 유영 (골옵션 - 배두 / 듯옵션 - 배도) - 행사시점 (미국형 - 언제든 / 유럽형 - 만기일)

12.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일반원칙)

거래목적	회계처리	파생상품 등 평가기준
매매목적	당기손익	
공정가치위험회피	당기손익	
현금흐름위험회피	(위험회피 비효과적) 당기손익 (위험회피 효과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공정가치
해외사업장순투자 위험회피	(위험회피 비효과적) 당기손익 (위험회피 효과적)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 파생상품 위험희피회계

구분	항목	회계처리	直과
공정가치위험 회피회계	자산, 부채, 확정계약 예) 재고자산매입 확정계약	당기손익	위험회피수단과 위험회피대상 항목이 서로 반대손익을 인식하여 공정가치 변동 위험 상계
현금호름위험 회피회계	미래에 예상되는 거래 예) 유형자산의 미래예쌍매입에 따른 취득가액변동	- 위험회피 효과적 : 기타포괄손익 인식 후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조정 - 위험회피 비효과적 : 당해년도에 당기손익 인식	해당 거래에 따른 미래현금흐름변동을 상쇄

14. 리스관련용어

14. 디드펀턴등의	
	- 기초자산 사용권과 관련하여 리스기간에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조정리스료와 리스제공자가 지급하고 리스이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용역원가와 세금 등은 제외
	-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의 리스료
리스료	> 고정리스료 + 변동리스료 +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종료선택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포함
	- 리스제공자: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 리스이용자의 특수관계자, 리스제공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제 3 자의 잔존가치보증을 포함

	*고정리스료: 고정리스료 - 리스인센티브 변동리스료: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료가 달라지는 리스 금액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해당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종료선택권: 해당 리스를 종료하기 위해 부담하는 금액
리스총투자	리스료 + 무보증잔존가치 (금융리스에서 발생)
리스순투자	리스총투자를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리스료의 현재가치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미실현 금융수익	리스총투자 - 리스순투자
내재이자율	 리스료 및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합계액을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와 리스제공자의 리스개설직접원가의 합계액과 동일하게 하는 할인율 리스제공자 입장에서 리스투자에 대한 수익률

15. 금융리스 분류

구분	내용
소유권이전약정기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리스이용자에게 이전되는 리스
염가매수선택권약정기준	리스이용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의 공정가치보다 충분히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으로 기초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리스약정일 현재 거의 확실
리스기간기준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더라도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 연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공정가치회수기준	리스약정일 현재 리스료의 현재가치가 적어도 기초자산 공정가치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범용성 없는 자산

기초자산이 특수하여 해당 리스이용자만이 주요한 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16. 금융리스의 회계처리

구분	리스개시	수익/비용 인식
리스제공자	- 리스개시일에 금융리스에 따라 보유하는 자산을 리스순투자와 동일한 금액의 수취채권으로 계상 - 리스채권은 유효이자율법으로 상각 - 리스채권 = 리스순투자 = 기초자산의 공정가치 + 리스개설 직접원가 = (리스료 + 무보증잔존가치)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채권의 원금회수와 이자수익의 인식: 리스료는 리스채권의 원금회수액과 이자수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리스이용자	- 리스기간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 1) 리스자산 = 리스부채 최초 측정금액 +/-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하거나 받은 리스료(지급한 리스료 가산)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리스조건상 리스자산 복구충당부채 2) 리스부채 - 무보증잔존가치는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음 -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할 할인율은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이며,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 금융원가, 리스부채의 안분: 매기 지급하는 리스료는 금융원가(이자비용)와 리스부채 상환액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발생: 자산의 소유권을 획득할 것이 불확실한 경우: 리스기간과 자산의 내용연수 중 짧은 기간에 걸쳐 감가상각 리스이용자가 소유한 다른 감가상각대상자산의 감가상각정책과 일관되어야 함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적용 -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측정 - 리스부채 =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 - 리스부채는 사용권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지 않음	-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 소유권 이전 조건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 (사용권자산 취득원가 - 잔존가치) / 내용연수 - 반환조건 리스자산 감가상각비 = 사용권자산 취득원가 / Min(자산의 내용연수, 리스기간)
--	--	---

17. 기타의 리스거래

구분	내용
	- 리스제공자에게 일반판매에 대한 회계쩡책에 따라 매출손익과 리스기간 동안의 이자수익이 발생
제조자나 판매자인 리스제공자의 금융리스	- 리스제공자의 회계처리 매출액 = Min(기초자산의 공정가치, 리스료의 현재가치) 매출원가 = 기초자산의 원가 - 무보증잔존가치의 현재가치
	- 리스제공자가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 제시하는 경우, 시장이자율을 적용하였을 경우의 금액을 한도로 매출이익인식
	판매자인 리스이용자가 구매자인 리스제공자에게 자산을 이전하고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여 사용
판매후리스거래	1) 리스이용자 - 자산이전이 판매인 경우 :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 - 자산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금융부채 인식
	2) 리스제공자 - 자산이전이 판매인 경우 : 자산의 매입 회계처리와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수행 - 자산이전이 판매가 아닌 경우 : 이전된 자산을 계속 인식하지 않고, 이전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금융자산 인식

현금흐름표

01. 현금흐름표의 유용성과 한계

구분	내 용
유용성	 현금흐름표로 알 수 있는 정보 영업활동현금흐름과 당기순이익 간의 차이에 관한 정보 투자활동에 관한 정보 재무활동에 관한 정보 미래현금흐름에 관한 정보 부채상환능력과 배당금지급능력에 관한 정보
	- 기간 간의 관계를 보여주지 않아 장기현금흐름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 제공
현금흐름표의 한계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보다 절대적으로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가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보완적인 기능을 수행

02. 현금흐름의 종류

구분	정의	예시
영업활동	주로 기업의 주요 수익창출활동에서 발생	 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에 따른 현금유입 로열티 수수료 중개료 법인세의 납부 및 환급
투자활동	장기성자산 및 현금성자산에 속하지 않는 기타투자자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련된 활동	- 유형,무형자산 및 기타 장기성자산의 취득에 따른 현금유출과 처분 -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 채무상품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현금유출입

재무활동	기업의 납입자본과 차입금의 크기 및 구성내용에 변동을 가져오는 활동	- 주식이나 기타 지분상품의 발행에 따른 현금유입 - 주식의 취득이나 상환에 따른 소유주에 대한 현금유출 - 차입금의 상환에 따른 현금유출 등
------	--	--